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제한〉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9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2
2.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징계에 따른 퇴직금 등의 제한 규정 신설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3.
3. 회부연월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개정안은 비위관련 형사사건 기소, 수사·감사기관의 수사·감사 진행, 징계의결 요구, 자체감사 진행 등의 사유가 있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0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u>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임명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u> <u>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u>

현행	개정안
<신설>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사 또는공단 임직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사 또는공단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

현 행	개 정 안
	<u>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3. <u>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② <u>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이 범죄 및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이 허용되지 않으나,¹⁾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범죄 및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및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²⁾에서는 임면권자(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강화된 책임감과 도덕성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공기업 경영을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 관계³⁾에 있으나, 직원의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

2)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p. 30

③ 의원면직 제한 등

가. 의원면직 제한

- 임면권자(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

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관계⁴⁾로서 양자는 그 법적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법적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⁵⁾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분 및 근거법령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징계에 따른 퇴직금 등의 제한 규정 신설

개정안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해임,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0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u> <u>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u>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 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시, 해임·파면된 경우 퇴직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축소되어 지급되나,⁶⁾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형사재판의 확정 및 해임·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더라도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이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재판의 확정 및 해임·파면

6)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에 준하는 징계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⁷⁾에서도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비위행위로 해임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방공기업의 직원의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관계로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7)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p. 30

③ 의원면직 제한 등

나. 퇴직금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 마련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원에 한함

8)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한편, 사용자는 이러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지방공기업 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무원의 법적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퇴직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333